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구 미 시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고 있는 산동면은 2019년 4월말 인구 2만명을 초과하여 읍 승격의 법적 요건 갖추
- 나. 지역발전의 촉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읍 행정을 희망하는 지역 여론이 급증함에 따라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산동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1항
-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설치할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나.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3항
-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
-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제3항
-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거주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
 -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

3. 주요내용

가. 대 상 : 산동면 ⇒ 산동읍 승격

나. 법적요건

2019. 12월말 내국인 기준

인구 2만이상(총족)			시가지구성지역인구(총족)		도시적산업종사가구(총족)	
인구	면적	가구	인구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25,032	58.65km ²	9,981	21,668	86.6%	7,985	80.0%

*시가지 구성 지역 인구(시가지와 연결된 건물 밀집지역, 주거·상업·공업 연결지역)
: 신당3~15리(13,076명), 인덕3~9리(8,592명)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 전체가구(9,981가구) - 1차 산업 종사가구(1,996가구)
【1차산업 종사가구 : 농업 1,826, 축산업 170】

다. 인구추이

단위: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월말	증 가 율	
						2015~2019년	전년도 대비
3,700	4,438	14,613	17,756	25,032	25,962	증576%	증3.7%

라. 주민의견

- 산동은 불과 5년전까지 인구 3천여명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4공단 확장단지와 5공단이 조성되면서 현재 인구 2만 6천여명의 도시와 농촌,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변화하여 인구유입 등 지역의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주민 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산동면민 대다수가 읍 승격시 행정적 기반 확충에 따른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 기반확충과 문화적 생활환경 등의 조성으로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읍 승격 주민조사 결과 : 전체 4,751세대 제출(산동면 전체 10,273세대의 46.2%)
[찬성 4,489세대(94.5%), 반대 176세대(3.7%), 무효 86세대(1.8%)]

마. 기대효과

- 읍 승격시 이에 걸맞은 각종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교육·문화 등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읍 기준의 행정기구 확대 및 인력 증원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충족

바. 주요 추진상황 및 계획

- | | |
|-------------------------|-------------|
| - 읍 승격 기본 계획 수립 | 2020. 1월 |
| - 읍 승격 실태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 | 2020. 3~4월 |
| - 읍 승격 추진 의회 의견 청취 | 2020. 5월 |
| - 읍 승격 신청(道경유 행정안전부 제출) | 2020. 5월 |
| - 행정안전부 검토 및 승인 | 2020. 6~11월 |
| - 읍 설치 조례 제정안 의회 심의·공포 | 2020. 11월 |
| - 행정조직 등 정비 | 2020. 12월 |
| - 읍 승격 기념식 | 2021. 상반기 |

※ 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나. 입법예고 :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붙임1】

구미시조례 제 호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구미시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한다.

제3조(관할구역) 구미시 산동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 명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구미시	산동읍	현행 산동면과 같음 (동곡1리, 동곡2리, 도중리, 적림리, 성수1리, 성수2리, 신당1리, 신당2리, 신당3리, 신당4리, 신당5리, 신당6리, 신당7리, 신당8리, 신당9리, 신당10리, 신당11리, 신당12리, 신당13리, 신당14리, 신당15리, 봉산1리, 봉산2리, 임천리, 인덕1리, 인덕2리, 인덕3리, 인덕4리, 인덕5리, 인덕6리, 인덕7리, 인덕8리, 인덕9리, 백현1리, 백현2리, 송산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한다.

②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읍면동의 명칭”란과 “관 할 구 역”란의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한다.

③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4. 급지구분”의 “2급지”란의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한다.

④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읍면동별”란의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한다.

⑤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읍면”란의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한다.

⑥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선산보건소 관할”의 “명칭”과 “위치”란의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한다.

⑦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지역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한다.

⑧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읍·면·동”란의 “산 동 면”을 “산 동 읍”으로 하고, “소재지”란의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한다.

⑨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김 용 보
	담 당	김 성 학
	담 당 자	조 영 상 (480-6764)